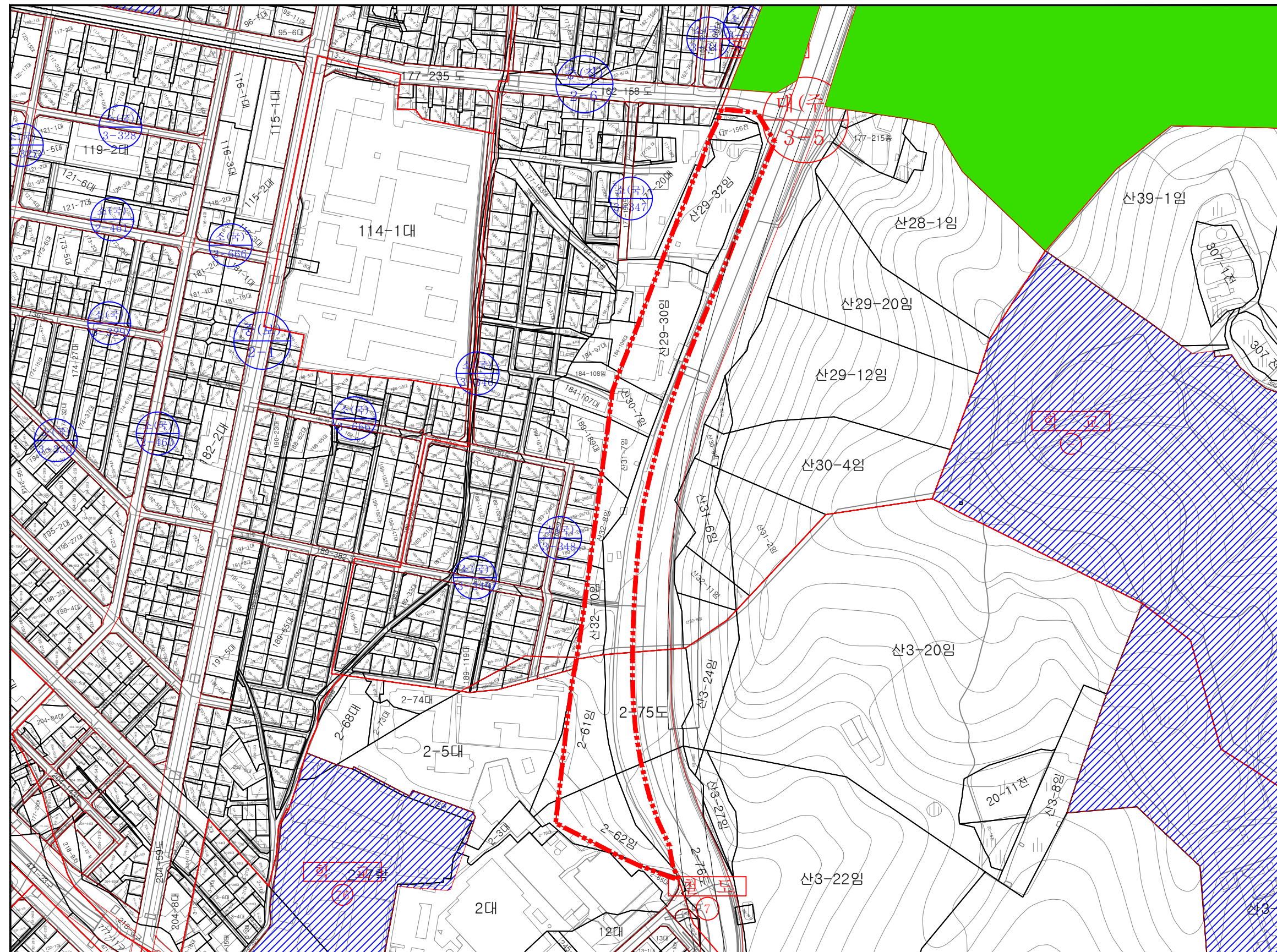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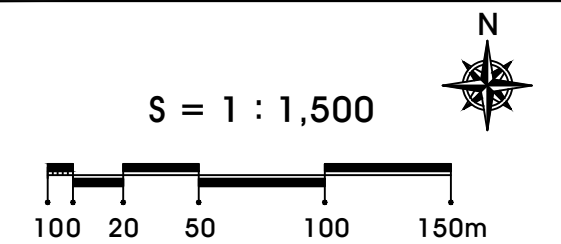
V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

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
원미(단절토지) 지구단위계획

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
결정(기정도)



-  지구단위계획구역
-  도로
-  공원
-  녹지
-  학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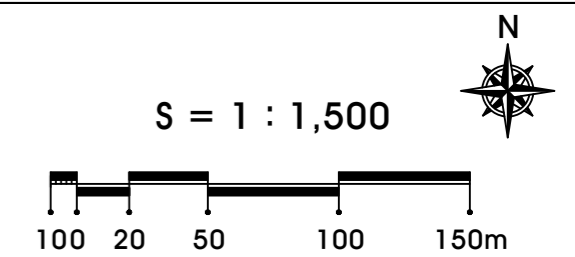
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원미(단절토지) 지구단위계획

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도

- 지구단위계획구역
- 종교시설용지
- 주차장용지
- 기타용지(현황도로)
- A 가구번호

용적률	용도
건폐율	높이(층수)

구분	계획내용	
종교시설 용지 (A)	허용 용도	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(다만, 장례식장은 종교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)
	불허 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 용도
주차장 용지 (P1, P2)	허용 용도	•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속시설(주차전용건축물 포함) • 주차전용건축물에 허용되는 용도는 아래와 같다. 1. 주차장 2. 제1종근린생활시설(안마원 제외), 제2종 근린생활시설(장의사, 총포판매소, 단란 주점, 안마시술소 및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), 운동시설(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에 한한다.(단, 주차장 외의 용도는 건축물 연면적의 30% 이내에서 허용)
	불허 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 용도 • 옥외골프연습장 및 학교정화구역내 불허용도는 제외 •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



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장용지
「주차장법」에 따른 「주차장법」에 따른

80% 종교시설용지
20% 4층이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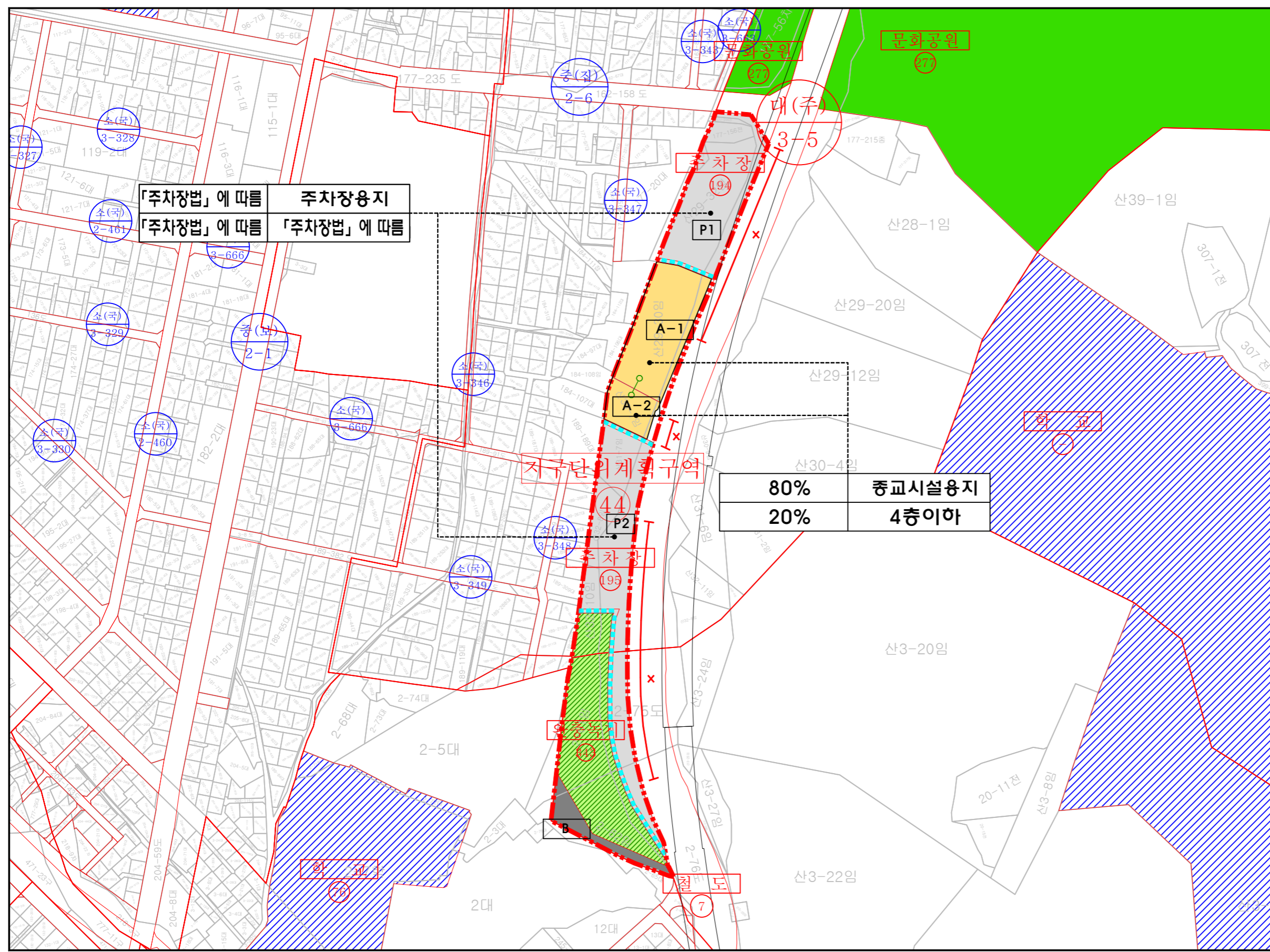
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장용지
「주차장법」에 따른 「주차장법」에 따른

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원미(단절토지) 지구단위계획

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도

- 지구단위계획구역
- A-1 가구 및 획지번호
- 공동개발(권장)
- 공공보행통로
- x 차량출입불허구간
- 도로
- 주차장
- 공원
- 녹지
- 학교

용적률	용도
건폐율	높이(층수)



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장용지	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장용지
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

80%	종교시설용지
20%	4층이하

S = 1 : 1,500

